

1. 駐車場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672號 1992. 6. 30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다음에서 정한 비율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9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 : 9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80퍼센트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0퍼센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

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 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의2 (주차장정비계획의 수립 보고)

법 제4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계획연도 개시 3월전까지 보고하되, 인구 30만이상시의 시장은 교통부장관에게, 그외의 시의 시장 및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 3 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8조의2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긴급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시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다.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frac{\text{도시철도건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times \frac{\text{도시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 5 조제1항 본문중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9 조중 “건설부령”을 “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점용료의 감면)”을“(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의견진술의 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중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를 “관광지·휴양지·유원지등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하는 때에는”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령으로 정한
다.

[별표 1] 비고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
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비고 제9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2
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3066호 부칙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
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
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
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
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
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
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주차장법이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3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주차전용건축물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의 70퍼센트~95퍼센트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함(영 제1조의2).
- 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1천300퍼센트이하에서 1천500퍼센트이하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도로의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배~3배이하가 되도록 하여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함(영 제2조제2항).
- 다. 주택개발사업등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과 시가지조성사업을 단지조성사업등에 포함시켜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4조).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